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5. .

제 안 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, 기존 법률 조문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체계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함(안 제3조).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”을 “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	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-----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----- ----- ----- -.
<신 설>	② 정부는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<삭 제>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	③ ----- 제1항 및 제2항---	② ----- 제1항-----

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 을 고려하여 그 지 역의 소상공인시책 을 수립·시행하여 야 한다. ③·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·④ (개정안 제4 항 및 제5항과 같 음)
--	---	--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5.

발 의 자 : 오세희 · 허종식 · 안태준
강준현 · 서영교 · 장종태
박선원 · 박희승 · 박용갑
이훈기 · 이재관 · 위성곤
이연희 · 이광희 · 채현일
임호선 · 이강일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
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
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·배송·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
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. 특히, 일정 금액 이하 해
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
유입되어 동일·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우려가
커지고 있음.

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
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

-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법 개정에 따른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(안 제3조제2항 삭제), 기존 법률 조문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(안 제3조제1항)

법률 제 호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”을 “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<u>보 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 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 행하여야 한다.</u> ② ~ ④ (생 략)	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) ① ----- <u>보 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해 전자 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 여</u> -----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